

용인시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

제정 2007. 8. 3 규칙 제 546호
일부개정 2017. 10. 2 규칙 제 886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)
일부개정 2021. 12. 20 규칙 제1060호(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용인시 규칙
일괄개정규칙)
일부개정 2023. 6. 9 규칙 제1107호(제명개정)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용인시 상징물 조례」에 따른 용인시 상징물관리 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상징물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1. 12. 20, 2023. 6. 9>

제2조(구성) ① 용인시 상징물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한다. <개정 2021. 12. 20>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용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제2부시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<개정 2017. 10. 2>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<개정 2021. 12. 20>

1. 당연직 위원은 시 본청 국장, 상징물업무 담당 실·과장으로 함.
2. 위촉직 위원은 상징물의 디자인, 홍보, 마케팅 분야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5명 이상 9명 이하로 함.

제3조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
제4조(위원의 해촉) 용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2.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

3.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

제5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위원회의 회의 등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일시, 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의견의 청취)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8조(위원회의 간사 등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상징물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이 된다.

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·보관하여야 한다.

제9조(전문위원회) ① 위원회의 소관사항 중에서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연구·검토의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과제별 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전문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,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상징물업무 담당실·과장 또는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<개정 2021. 12. 20>

제10조(수당 등)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수당, 여비,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21. 12. 20>

제11조(운영규정)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

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2조(사용료) 「용인시 상징물 조례」 제9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.

[본조신설 2023. 6. 9]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7. 10. 2 규칙 제886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단, 별표 8의 회계과, 세정과 소관 사무 중 자금운용·관리와 자금배정에 관한 사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부터 ④ 까지 생략

⑤ 「용인시 상징물관리위원회 운영 규칙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부시장”을 “제2부시장”으로 한다.

⑥ 부터 ② 까지 생략

부칙 <2021. 12. 20 규칙 제1060호,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용인시 규칙 일괄개정규칙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3. 6. 9 규칙 제1107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 <신설 2023. 6. 9>

상징물(캐릭터) 사용료 (제12조 관련)

$$\text{사용료} = \text{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} \times \text{제품의 판매단가} \times \text{기본율}$$

<비고>

1. 총판매예정수량: 사용허가등 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한 것
2. 제품의 판매단가: 사용허가등 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의 평균가격
3. 기본율: 3퍼센트